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44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조정훈·최수진·인요한

정성국 • 박충권 • 김대식

김용태 · 서명옥 · 조경태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의 소관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밖청소년에는 대안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포함되며, 학교밖청소년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에도 학 교밖청소년 및 학교교육을 각각 여성가족부, 교육부에서 소관함에 따 라 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학교교육·"을 "학교교육(학교밖청소년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2조 중 "및"을 "(학교밖청소년업무는 제외한다)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 무는 교육부장관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된 여성가족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

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률에 따라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여성가족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교육부장관의 행위 또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 또는 여성가 족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부, 교육부장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제28조(교육부) ①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	
육·교육, <u>학교교육·</u> 평생교육,	한교교육(학교밖청소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u>년업무를 포함한다) •</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	제42조(여성가족부)
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u>및</u> 가족(다문화가족과	(학교밖청소년업무는 제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u>외한다) 및</u>
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